제87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은행 단순기본자본비율(레버리지비율) 산출기준 변경(강화) ㅇ 바젤위원회의 레버리지비율 산출기준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「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기준(별표3-8)」을 변경 - 파생상품 익스포저 산출방식을 현행 커런트 익스포저 방식에서 개정 표준방식(SA-CCR)로 변경(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(<별표3>)과 동일한 방식) -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평잔을 공시항목에 추가 ▶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	1.비중요
2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절차(강화) ㅇ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500% 이상으로 규정 및 예비입주자 현황을 180일 동안 공개 ▶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, 제26조의2 2.당첨자 명단관리 강화(강화) ㅇ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하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방지 ▶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보고서 제출 의무 등 추가(강화) ㅇ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▶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8조,제4조 2.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의 대상 신설(신설) ㅇ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기준설정 ▶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1조 3.정밀안전진단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신설(신설) ㅇ 정밀안전진단 평가기관으로부터 차량정비 등의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재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▶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9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조쇄 및 분쇄 시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에 추가 등(강화) ○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조쇄·분쇄 작업시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업종에 기존 시멘트제조업 외에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 ▶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	1.비중요